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422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이승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PK
담당변호사 박지연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 대구 달성군 소재 B한의원 개설자이다.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22. 6. 초순경 위 의원 3층 안내데스크 위 입간판에 "C 영수증 리뷰 시 파스 6매 or 경옥고스틱 하루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2023. 4. 6.



까지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의,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이 병원 안내데스크 입간판에 C 리뷰 시 사은품(파스 6매 또는 경옥고스틱 하루분)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아닌 점, ② C 리뷰를 통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직접 의료 서비스와 수준과 친절도, 의원의 분위기 등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행위는 오히려 의원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원 선택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단순히 파스 6매 내지는 경옥고스틱 하루분으로 사은품의 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3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승호 _____